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박희승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86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30.

발 의 자 : 박희승 · 서영교 · 어기구
김문수 · 위성곤 · 박용갑
한정애 · 김한규 · 박상혁
김남희 · 윤준병 · 소병훈
황명선 · 최기상 · 전진숙
이재정 · 정성호 · 한민수
민병덕 · 정준호 · 신정훈
최혁진 의원(2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고 있음.

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 등으로 최근 무연고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특히 연고자가 있으나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아예 없는 경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임.

또한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하여 조례를

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, 각각의 재정여건 및 정책 우선도 등에 따라 지원단가에 큰 차이가 나타나고 거주 지역에 따른 형평성 차이가 큰 상황임.

이에 무연고 시신 등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·기피하는 시신을 법률에 명확히 명시하여 포함하고,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례비용 등 지원을 의무화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, 공영장례비 지원단가, 인구 대비 무연고 시신 비율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여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키려는 것임(안 제12조 및 제12조의3 신설).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”을 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(이하 “무연고사망자등”이라 한다)의”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무연고 사망자가”를 “무연고사망자등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에”로, “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”을 “무연고사망자등의 시신(이하 “무연고시신등”이라 한다)을”로, “무연고 사망자가”를 “무연고사망자등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무연고 시신 등을”을 “무연고시신등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무연고 시신 등을”을 “무연고시신등을”로, “지원할 수 있다”를 “지원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1.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
2.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
3.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사망자

제12조의2 중 “무연고 시신 등을”을 “무연고시신등을”로 한다.

제2장에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3(공영장례 지원)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

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무연고사망자등

2.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시장등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장례절차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, 인구 대비 무연고 사망자 비율,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등을 포함한 공영장례 실시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4제1항제3호 중 “무연고 사망자”를 “무연고사망자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<u>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</u>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<u><신 설></u>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<u>무연고 사망자가</u>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·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 및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, 사망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본인이 서명한 문서 또는 「민법」의 유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유언의 방식으로	제12조(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) ① ----- -----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</u> <u>(이하 “무연고사망자등”이라 한다)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<u>연고자가 없는 사망자</u> 2. <u>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</u> 3. <u>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회피하는 사망자</u> ② ----- --- <u>무연고사망자등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지정한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장례의식을 주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(無緣故 屍身)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(이하 “국가유공자등”이라 한다)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,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(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)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④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하며, 공고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.

⑤ (생략)

-----.

③ -----제1항에-----무연고사망자등의 시신(이하 “무연고시신등”이라 한다)을-----무연고사망자등이-----

-----.

④ -----무연고시신등을-----
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는 경우 장례의식 등 최소한의 존엄이 보장되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제12조의2(유류금품의 처분) 시장등은 제12조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한 때에는 사망자가 유류(遺留)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그 비용에 충당하고, 그 부족액은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.

<신설>

⑥ -----무연고시신등을-----

-----지원하여야 한다.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2조의2(유류금품의 처분) -----
-----무연고시신등을-----

-----.

제12조의3(공영장례 지원)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의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활한 장례절차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

1. 무연고사망자등

2.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등으로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 시장등이 장

제33조의4(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(이하 “장사지원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3.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
4. ~ 8. (생략)

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망자

② 제1항에 따라 시장등이 장례절차 진행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, 인구 대비 무연고 사망자 비율,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는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비 지원단가 등을 포함한 공영장례 실시현황을 점검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3조의4(장사지원센터의 설치 등) ①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무연고사망자등-----
4. ~ 8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